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2693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쌍방
검 사 채용욱, 황진아, 김제성(기소), 하경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광해(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 7. 2. 선고 2024고단197, 2024고단
609(병합), 2025고단111(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9.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스크 사업을 통한 고수익을 약속하거나 가상상품이 가치가 있다고 기망하여 8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고, 7,000만 원이 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피해 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의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향후에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기 위하여 제대로 살피지 않고 투자를 결정한 피해자들의 과실도 있는 점, 편취액 및 수신액 중 일부는 투자수익금 형태로 일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19

재판장 판사 이은정 _____

 판사 김양호 _____

 판사 김성열 _____